

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[별표 4] <개정 2024. 1. 12.>

보상금 지급 구분표(제22조 관련)

1. 전상군경, 공상군경, 4·19혁명부상자 및 특별공로상이자

| 상이등급별 | 월 지급액(천원) | 상이등급별 | 월 지급액(천원) |
|-------|-----------|-------|-----------|
| 1급 1항 | 3,681     | 5급    | 1,919     |
| 1급 2항 | 3,471     | 6급 1항 | 1,751     |
| 1급 3항 | 3,323     | 6급 2항 | 1,612     |
| 2급    | 2,955     | 6급 3항 | 1,083     |
| 3급    | 2,762     | 7급    | 608       |
| 4급    | 2,317     |       |           |

2. 6·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: 월 161만2천원

3. 전몰군경, 순직군경, 4·19혁명사망자 및 특별공로순직자의 유족과 전상군경, 공상군경, 4·19혁명부상자, 특별공로상이자 및 6·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 유족

| 구분   | 월 지급액(천원) |
|--|-----------|
| 가. 전몰군경 및 순직군경의 유족   |           |
| 1) 배우자   | 1,939     |
| 2) 25세 미만 자녀 또는 미성년 제매   | 2,249     |
| 3) 부모 또는 조부모   | 1,906     |
| 나. 4·19혁명사망자 및 특별공로순직자의 유족과 상이등급 1급부터 5급까지에 해당하는 전상군경, 공상군경, 4·19혁명부상자, 특별공로상이자와 6·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 유족 |           |
| 1) 배우자   | 1,681     |
| 2) 25세 미만 자녀 또는 미성년 제매   | 1,952     |
| 3) 부모 또는 조부모   | 1,654     |
| 다. 상이등급 6급에 해당하는 전상군경, 공상군경, 4·19혁명부상자, 특별공로상이자가 사망한 경우 그 유족   |           |
| 1) 배우자   | 617       |
| 2) 25세 미만 자녀 또는 미성년 제매   | 890       |
| 3) 부모 또는 조부모   | 585       |

비고: 사망한 사람이 2명 이상인 유족에 대해서는 사망한 사람 1명당 보상금 지급 구분에 해당하는 월 지급액을 각각 합산하여 지급한다.